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및 실내표지 부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변경한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 업무를 정비하고, 실내환경관리 센터에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업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합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4조의5에 따른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업무

별표 제2호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과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너목(종전의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제3호	500	1,000	2,000
카.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제7호의3	250	370	500
타.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제4호	500	1,000	2,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차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 ----- ----- -----.
<신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1. ~ 3. (생략)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신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2조의3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4조의5에 따른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환경과	
연 락 처	(044) 201 - 6799